제 3 장 무력충돌중의 통제

제 1 절 전략적 조치

167. 원칙

관련조약의 당사국들과 특히 교전당사국 및 중립국은 전쟁법상 자국(自國)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68. 충돌의 관리

적대행위의 발발과 더불어 교전당사국은 계속적으로,

1) 원칙적으로 평화의 회복에 목표를 두어야 하고
2) 관할지역내에서 전쟁법을 존중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3) 무력충돌을 피하거나 최소한 확대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169. 이익보호국 (G.P.I,5)

적대행위의 발발과 더불어 각 교전당사국은 전쟁법의 감독과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이익보호국을 지명하여야 한다.

170. 국가안보정책

전략적 고려에 기초한 국가안보정책은 다음 사항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1) 전쟁상태의 악화 방지
2) 불가피한 전쟁상태의 악화에 대한 통제의 유지

그러한 정책과 그에 상응하는 기획은 한편으로는 작전확대나 전쟁상태의 악화를 통한 군사적 이익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민간인 사상자 및 피해 가능성간에 비례의 원칙이 포함되어야 한다.

171. 적용법: 입증 필요성

적대행위의 발발과 더불어 각 교전당사국은 해당 무력충돌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전쟁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전쟁법에 관한 일반조약

2) 특수무기에 관한 특별한 원칙 (부록I 참조)
3) 특별한 조약에 대한 국내적 해석과 유보
4) 국제관습법과 지역적 관습

172. 적용법: 해당국가의 전략적 상황

전쟁법은 해당국가의 전략적 상황과 교전당사국의 환경으로부터 야기되는 국가적 필요에 따라 적용된다 (예: 내륙국가 또는 도서국가(島嶼國家)).

173. 적용법: 국내적 명확성

전쟁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 결과에 따라 수시로 국내법으로서의 명확성을 더하기 위하여 군대에는 상세한 전쟁법 내용이 교육되어야 한다.

174. 적용법: 분쟁의 성격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국제무력분쟁에 대한 명확한 개념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적대 당사국은 그 분쟁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다 (예: 해당정부는 그 상황이 전적으로 국내의 평시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적대단체에서는 이 경우에도 전쟁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국 군대에 대한 질서와 기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무력충돌에 관하여 원칙이 그대로 행위규범으로서 지켜져야 한다.

175. 중립과 전쟁의 혼합상황

중립과 전쟁의 혼합적 상황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행동지침이 군대에 내려져야 한다.
그러한 지침은 평시에 이미 설정된 것을 기초로 또는 그에 관하여 만들어질 수 있다.

176. 특수상황: 원칙

전쟁법은 모든 군사작전에 관하여 규율한다. 그러므로 각 교전당사국은

항상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전략정보에 기초한 적절한 기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전쟁법과 관련하여 당황하거나 오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한 기획은 군대에 대한 교육으로 유도될 것이다 (예: 전투행위에 관한 일반원칙). 그 결과 그 지휘관들은 적절한 전투수칙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177. 특수상황: 상이한 군대간의 전투

전쟁법적 관점에서 볼 때, 상이한 군대간의 전투는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한 특수상황에 해당한다.
상이한 군대간의 전투는 적대교전국의 매우 상이한 전술과 전투수단에 의하여 초래될 수 있다.
국제무력충돌에 관한 원칙을 행위규범으로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쟁법의 취지에 합당하게 추가적으로 전투 및 전투행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예: 주어진 상황에 대한 특수한 전투원칙).

제 2 절 시행조치

178. 원칙 (G.I,45,47; G.II,46,48; G.III,127; G.IV,144; H.CP 25; G.P.I,80,83)

무력충돌중 시행상의 통제조치는 다음의 사항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1) 평시에 이미 채택되고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적절히 발전시키는 일
2) 전쟁법의 세부적 시행을 보장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 조치를 취하는 일

179. 특별협정 (G.I,15,23; G.II,18; G.III,109-111; G.IV,14,15; G.P.I,26,27,59,60)

적합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언제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교전당사국 사이나 중립국 사이에 적절한 수준의 특별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일정한 지역을 군사작전으로부터 적정한 거리에 두고자 할 때(예: 병원지대나 비무장지대)
2) 일정한 지역에서 적대행위의 유예나 중지를 위하여 (예: 부상자의 색출, 중립지대의 설정을 위하여)
3) 의무수송, 특히 항공수송을 위하여 (예: 적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상공을 식별표지를 이용하여 비행하고자 할 때)
4) 포로를 중립지역으로 송환 또는 이동시키고자 할 때
5) 비방어지역과 비무장지대를 식별표지로 표시하고자 할 때

180. 통지 (G.I.48; G.II,22,49; G.III,23,43,128; G.IV,83,145; H.CP,26; G.P.I,12,23,25,43,84)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교전당사국이나 관련 중립국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점에 관하여, 통신 및 통지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1) 평시에 상호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쟁법 원문의 공식번역문과 그에 관련하여 채택된 국내 법령
2) 군대내의 법집행을 위하여 조직한 준군사적 기구나 군기관
3) 포로수용소나 민간인 수용소 그리고 의료기관의 위치
4) 병원선이나 기타 의무선박의 이름이나 그 상세한 내역
5) 적의 지대공무기(地對空武器) 사정거리내에서의 의무후송비행
6) 포로의 지위가 부여될 수 있는 사람의 계급
7) 포로의 유언의 유효성에 관하여 그 고유성을 입법화 하는 데 필요한 사항

181. 형사소추 (G.I,49; G.II,50; G.III,129; G.IV,146; H.CP,28; G.P.I,85,88)

교전당사국은 전쟁법의 위반이 징계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중대한 전쟁법 위반을 억제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조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182. 시행경로
다음의 경우에는 상호 의사소통과 문서의 전달을 위하여 적절한 시행경로가 설정되어야 한다.

1) 정부군과 민간당국간 (예: 포로수용소와 국가포로정보국간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2) 정부당국과 전쟁법 준수보장기관, 중립국 또는 기타의 중간매개기관간 (예: 국가포로정보국과 중앙포로정보국간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183. 시행문서
상황에 따라서, 기존의 시행문서가 채택되기도 하고 새로운 문서가 예컨대 다음과 같이 설정되기도 하여야 한다.

1) 다른 언어로 번역된 문서
2) 다른 범주에 속하는 사람에 관한 신분증명서류(예: 지원자, 새로운 범주의 군대)
3) 의료기록을 위한 새로운 양식(예: 혈액이나 피부의 기증이나 포로에 관한 의료절차에 관한 것)
4) 서류에 삽입될 추가적 자료
5) 새로운 상황을 위한 서류(예: 특수지역내에서의 군대와 민간인에 대한 교육)

제 3 절 기본적 보호

184. 원칙 (G.P.I, 72, 75)
전쟁법은 전투원이나 군사목적물 외의 사람과 물건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있다.
이 절에서 부여되는 기본적인 보호는 교전당사국나 중립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과 물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는 기본적인 인도주의원칙과 인권에 상응하는 것이므로 자국민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185. 법적 기초 (G.I, 3, 12, 24, 25; G.II, 3, 12, 36, 37; G.III, 3, 13; G.IV, 3, 27; G.P.I, 75)
기본적 보호의 원칙은 비국제적 및 국제적 무력충돌에 관한 조약 양자에 법적 기초를 두고 있다.

186. 책임 (H.V, 11-15, G.III, 4, 12; G.IV, 29)
외국인 및 자유가 제한된 사람 (예: 포로, 민간억류자, 체포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각 당사국은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휘하의 요원이 행한 대우에 대하여 그 요원의 개별적 책임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진다.

187. 인간적인 대우 (G.I, 12, 28, 29; G.II, 12, 36, 37; G.III, 13; G.IV, 27; G.P.I, 75)
인간적인 대우는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주어져야 한다.

188. 명예, 종교 (G.III, 14; G.IV, 27; G.P.I, 75)
사람과 그 사람의 명예, 신념 및 종교적 관행은 존중되어야 한다.

189. 여자, 어린이: 원칙 (G.I, 12; G.II, 12; G.III, 14; G.IV, 24, 27; G.P.I, 76, 77)
여자와 어린이는 그들의 성(性)과 나이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

190. 생명과 건강에 대한 침해의 금지 (G.I, 12; G.II, 12; G.III, 14; G.IV, 24, 27; G.P.I, 76, 77)
생명이나 건강 또는 사람의 전반적인 육체적, 정신적 복지에 대한 폭력은 금지된다.

191. 살인의 금지 (G.I, 12; G.II, 12; G.III, 13; G.IV, 32; G.P.I, 75)
살인은 금지된다.

192. 고문의 금지 (G.I,12; G.II,12; G.III,13; G.IV,3; G.P.I,75)
모든 종류의 고문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금지된다.

193. 체형(體刑)의 금지 (G.III,87; G.IV,32; G.P.I,75)
체형은 금지된다.

194. 절단의 금지 (G.III,13; G.IV,32; G.P.I,11,75)
개인의 건강상태나 의학윤리에 비추어 인정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단(예: 조직이나 기관의 제거, 이식)은 금지된다.

195. 치욕적 대우의 금지 (G.I,13; G.II,12; G.III,13; G.IV,27; G.P.I,75)
치욕적이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우(예: 강요된 매춘, 기타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모욕적 공격이나 추행)는 금지된다.

196. 인질의 금지 (G.IV,34; G.P.I,75)
인질행위는 금지된다.

197. 집단처벌의 금지 (G.III,87; G.IV,33; G.P.I,75)
집단처벌은 금지된다.

198. 위협의 금지 (G.III,17; G.IV,31; G.P.I,75)
위에서 금지한 행동을 가한다고 위협하는 것은 금지된다.

199. 차별금지: 원칙 (G.I,12; G.II,12; G.III,16; G.IV,27; G.P.I,75)
인종이나 색깔, 성별, 언어, 종교나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기원, 재산, 출생, 신분 기타 이와 유사한 기준에 의한 어떠한 차별적 대우도 금지된다.

200. 차별금지: 부상자 (G.I,12; G.II,12,G.P.I,10)
의학상의 이유에 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상자와 병자, 난선자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도 금지된다.

201. 체포, 억류 (G.IV,43,75; G.P.I,75)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체포, 억류, 수용된 사람에게는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써 그에게 취해진 조치의 이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기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빨리 석방되어야 한다.

202. 정규 사법절차 (G.III,82-86; G.IV,33,71-76,126; G.P.I,75)
누구도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무력충돌과 관련되는 형사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유죄판결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법절차를 존중하는, 공정하고 정규적으로 구성된 법원에 의하여 선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법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변호수단을 포함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연대책임이 아닌 개별적 책임의 원리
3) 범행이 범해질 당시의 법 (소급입법의 금지)
4) 유죄의 입증시까지 무죄추정
5) 피고인의 출석하에 공판진행
6) 자백강요의 금지
7) 유리한 증인의 출석
8) 불리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9) 일사부재리의 원칙
10) 판결선고의 공개
11) 항소나 기타 구제절차 및 그 행사기간에 대한 고지

203. 여자에 대한 사형 (G.P.I,76)
원칙적으로 임산부나 어린아이가 딸린 엄마에게는 무력충돌과 관련있는 범죄에 대하여 사형선고가 금지된다.
그러한 여자에 대하여 무력충돌과 관련한 사형의 집행은 어떠한 경우에

도 금지된다.

204. 어린이에 대한 사형 (G.P.I,77)
무력충돌과 관련한 범죄에 대하여 범행당시 18세가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형의 집행은 금지된다.

205. 물건: 약탈 (H.IV.R,28; G.IV,33; H.CP,4)
약탈은 금지된다.

206. 물건: 파괴 (H.IV.R,23; G.IV,53)
군사적 필요에 의하지 않은 파괴는 금지된다.

207. 물건: 압수 (H.IV.R,23)
군사적 필요에 의하지 않은 압수는 금지된다.

제 4 절 사람과 물건의 기본적 범위

208. 보호되는 사람 (G.P.I,51)
민간인은 직접 적대행위에 참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민간인은 그들이 직접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한, 공격받아서는 아니된다.

209. 보호되는 물건 (G.P.I,52)
민간목적물은 군사목적물이 되지 않는 한 공격받아서는 아니된다.

210. 보호되지 않는 사람 (G.P.I,43)
전투원은 직접적으로 적대행위에 참가할 수 있다.
전투원은 공격받을 수 있다.

211. 보호되지 않는 목적물 (G.P.I,52)
군사목적물은 공격받을 수 있다.

제 5 절 특별히 보호되는 사람과 물건

212. 사람: 일반원칙 (G.I,24; G.II,36,37; G.IV,20; H.CP,15; G.P.I,15,62)
특별히 보호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적대행위에 참가하거나 공격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들은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전투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자의 고유업무(예컨대 민간의료요원이나 민방위요원 및 그들의 수송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213. 의료활동의 윤리 (G.P.I,11,16)
"의료윤리"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적 의료기준과 유사한 의료상황에서 자국의 의료요원에게 적용되는 국내적 의료기준을 말한다.

214. 의료활동의 절차 (G.P.I,11)
의료절차는 반드시 1)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처치되어야 하며
2) 의료윤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215. 의료활동의 우선순위 (G.I,12; G.II,12)
의료상의 긴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미 정해진 치료의 순위를 무시할 수 있다. 국적이나 계급에 따라 치료의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16. 의료활동의 제한 (G.P.I,11; 1964년 헬싱키선언)
의사는 1) 환자의 치료에 유용할 경우에만 임상적 조사를 병행할 수 있고 2) 생명을 구하거나 건강을 회복하거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새로운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17. 의료활동의 보호 (G.P.I,16)
의료윤리에 합당하게 의료활동을 수행한 자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의료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1) 의료윤리에 반하는 행동이나 작업을 강요당하거나, 2) 의료윤리상 필요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218. 의료활동의 기록 (G.P.I,16)

의사나 간호원 등 의료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자기가 치료했거나 현재 치료하고 있는 부상자나 병자에 관한 정보가 환자나 그 가족에게 해롭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누구에게도 제공할 것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1) 의료활동 종사자의 국가법이나, 2) 전염병 발생 통고규정에 의하여 그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19. 물건에 관한 일반원칙 (G.I,19,35; G.II,22,23,27; G.IV,18,21,22; H.CP,4,8; G.P.I,56,60,62)

특별히 보호되는 물건은 1)군사목적물이 되거나, 2)달리 군사목적에 사용되거나, 3)공격당하여서는 아니된다.

220. 물건의 충분한 거리 (G.I,19; G.IV,18; H.CP,4; G.P.I,12,56)

전술상황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예컨대 산악지대에서 기념물이 유일한 도로변에 있는 경우나 부상자나 의료품을 하역하는 동안 불가피하게 의료차량과 군용차량이 인접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보호되는 물건과 군사목적물 사이에는 충분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221. 특별한 보호를 받는 문화재의 충분한 거리 (H.CP,8)

특별한 보호를 받는 문화재는 공격을 당하기 쉬운 대규모 산업센터나 군사목적물(예컨대 비행장이나 방송국, 방위업무에 사용되는 설비 및 이에 상응하는 중요성을 가지는 항구, 철도역, 주된 통신라인 등)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222. 병원지대(지구)와 비무장지대의 충분한 거리(G.I,Annex I; G.IV,Annex I; G.P.I,60)

군사작전은 병원지대(지구)나 비무장지대로부터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병원지대(지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대행위상의 중요한 영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특별한 보호를 받는 문화재에 관한 이격요건은 병원지대(지구)나 비무장지대에 대하여 유추적용된다.

223. 특별한 통제조치 (G.I,Annex I; G.IV,Annex I; H.CP,1,8; G.P.I,60)

교전당사국은 예컨대 기념물이나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병원지대(지구)에 대한 특별한 통제조치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24. 보호의 중지에 관한 원칙 (G.I,21; G.I,AnnexI; G.II,34; G.IV,19; G.IV, Annex I; G.P.I,13,23,56,60,65)

특별하게 보호될 자격이 있는 사람과 물건은 그들이 적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는 데 이용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들에 대한 보호는 적절한 경고가 있고난 뒤에만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고와 보호의 중단 사이에는 일정한 유예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225. 일반적 보호를 받는 문화재와 보호의 중지 (H.CP,4)

일반적 보호를 받는 문화재는 중대한 군사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그 보호가 중지될 수 있다. 군사적 필요를 설정할 권한은 엄격히 규제된다.

226. 특별한 보호를 받는 문화재와 보호의 중지 (H.CP,11)

특별한 보호를 받는 문화재는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 필요가 지속되는 기간에 한하여 그 보호가 중지될 수 있다. 그러한 군사적 필요성은 사단장급 이상의 지휘관에 의하여서만 설정될 수 있다. 그러한 보호를 철회할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을 정하여 사전에 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27. 위험한 물리력을 가진 시설과 보호의 중단 (G.P.I,56)
댐이나 제방 또는 원자력 발전소는,
1) 그들이 군사작전을 정규적으로 중대하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와,
2) 그러한 지원이 그들의 통상적인 기능을 초과하는 것이고,
3) 그러한 지원을 중지하기 위하여는 그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전쟁법상 보호받는 특별한 지위를 상실한다.

제 6 절 전쟁희생자

228. 포로 (G.P.I,44)
더 이상 전투원이 아닌 포로는 그들이 다시 직접적으로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한, 공격당하지 아니한다.
포로억류국은 관계자의 개인적 책임과는 별도로 포로에게 행해진 대우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29. 부상자,병자 및 난선자 (G.I,12; G.II,12; G.P.I,8)
부상자, 병자 및 난선자는 그들이 직접적으로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한 공격당하지 아니한다.

230. 사망자 (G.I,15; G.II,18; G.P.I,34)
사망자는 공격당하거나 약탈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금지는 유품이나 유골 및 묘지에도 적용된다.

제 7 절 보복

231. 정의
"보복(報復)"이란 적의 전쟁법 위반에 대해 이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그 대응으로써 행하는 전쟁법 위반을 말한다.
따라서 보복은 사실상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전쟁법을 준수하도록 복수의 형태로 적에게 가하는 경고 내지 압력으로 구성된다. 보복은 전쟁법의 직접적 강제를 위한 유일한 절차이다.

232. 금지되는 보복(G.I,46; G.II,47; G.III,13; G.IV,33; H.CP,4; G.P.I,20,51-56)
다음의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보복은 금지된다.
1) 민간인이나 민간목적물
2) 포로
3)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
4) 특별히 보호되는 사람과 물건
5) 민간주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
6) 자연환경

233. 허용되는 보복: 원칙
보복은 전쟁법준수의 회복을 위하여 최후로 사용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적의 행동이 심각하고 명백하며, 계획적인 전쟁법 위반이어야 한다.
보복은 적으로 하여금 전쟁법을 준수하도록 이미 다른 노력을 하였는데도 실패하였거나 현재의 노력이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만 행할 수 있다.

234. 허용되는 보복의 결정
각 교전당사국은 보복을 결정할 권한을 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그러한 권한은 교전국의 정부 최고위층에게 주어져야 한다.

235. 보복의 조건: 경고
전쟁법위반행위를 계속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보복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사전에 적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236. 보복의 조건: 비례의 원칙
보복은 적이 범한 전쟁법 위반행위와 비례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특히 보복의 범위와 수단은 적이 위반한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37. 보복의 조건: 보복행위의 종료
보복행위는 그 목적이 달성되면, 즉 적의 전쟁법 위반행위가 종료되면, 종료하여야 한다.

제 8 절 중개국의 활동

238. 원칙
일반적으로 무력충돌은 대응국 사이에 평시에 존재하던 관계를 손상시킨다 (예컨대 외교관계의 단절, 국경의 폐쇄, 교통이나 통신의 단절 등).
중개국은 이처럼 손상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239. 이익보호국에 관한 원칙 (G.I,8; G.II,8; G.III,8; G.IV,9; H.CP,21; H.CP.R,2-10; G.P.I,2,5)
"이익보호국"이란 일방의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되고 그 적국에 의하여 승인된 국가로서 전쟁법상 이익보호국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로 동의한 중립국가를 말한다.
이익보호국은 무력충돌이 개시되면 지체없이 지명되어야 한다.

240. 이익보호국의 기능 (G.I,8; G.II,8; G.III,8; G.IV,9; H.CP,21; H.CP.R,2-10; G.P.I,5)
전쟁법은 이익보호국의 협조와 감시하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익보호국의 활동은 외교관이나 영사관 등 특별히 그러한 목적하에 지명된 요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해당 요원들은 국가나 행정기관 및 공직자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41. 이익보호국의 주요임무 (G.I,11; G.II,11; G.III,11, 69-81,99-108,126; G.IV,12,43,55,71,74,143; H.CP,21; G.P.I,5)
이익보호국은 특히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1) 포로수용소나 민간인 억류캠프의 방문과 통제 (생활상태나 보급품 및 건강상태의 확인을 위하거나 서신에 의한 외부와의 자유로운 교신을 보장하기 위하여)
2) 외국 민간인의 수용 및 전범자나 외국 민간인에 대한 형사소추에 대한 확인과 필요시 그에 대한 개입
3) 점령지역의 보급상태의 확인
4) 문화재 보호위반에 대한 의견발표 및 질문 조사
5) 전쟁법의 적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 자국의 고급요원 지원

242. 이익보호국의 대행 (G.I,10; G.II,10; G.III,10; G.IV,11; G.P.I,5)
이익보호국에 관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불편부당한 인도적 기관이 그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국제적십자사위원회).
또한 대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고급요원을 지원할 수 있다.

243. 국제적십자위원회(G.I,9,44; G.II,9; G.III,9; G.IV,10; G.P.I,5,18)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전쟁법에 의하여 위탁된 인도적 임무를 담당할 수 있다.
충돌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쟁희생자를 위하여 기타의 인도적 임무(조력 및 구조)도 수행할 수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그 자체 및 그 통제하에 있는 인원, 시설, 수송수단을 위하여 흰 바탕에 적색 십자가가 그려진 식별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244. 중앙포로정보국 (G.III,123; G.IV,140; G.P.I,33)
국제적십자사위원회의 중앙포로정보국은 전쟁포로와 민간인(특히 수용된 자) 및 실종자 개인에 관하여,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중앙포로정보국은 이러한 정보를 해당자의 본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교전당사국은 중앙포로정보국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편의

를 지원하여야 한다.

245. 유네스코 (H.CP,23; H.CP.R,1-10)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UNESCO)는 문화재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전당사국을 지원한다.
문화재를 위한 총괄위원장 1 명이 각 교전당사국에 임명되이야 한다.

246.비국제전에서의 중개(G.I,3; G.II,3;G.III,3; G.IV,3;H.CP,19)
비국제전의 경우에도 1) 중앙포로정보국이 있는 국제적십자사와 같은 인도적 기관과, 2) (문화재에 관한) 유네스코에 의하여 교전당사국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47. 국제연합의 군사적 수단에 관한 원칙
관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국제연합은 적대관계에 있는 군대 사이에서 (예컨대 유엔군이나 평화선의 감시임무를 맡은 업서버 등)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248. 국제연합의 군사적 수단: 유엔군
각기 적대하는 군대에 참가하고 있는 유엔군은 충돌의 당사자가 아니다. 유엔군의 임무는 필요한 경우 전투무기를 사용하여 맡은 지역에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다.
적대하는 군대 사이에 배치되고 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아닌 유엔군은 적이 없다. 이 경우 유엔군은 중립국 군대와 그 지위가 유사하다.

제 9 절 중립국의 의무와 활동

249. 원칙 (H.V,11-15; H.XIII,11-24; G.I,8,27; G.II,8,25; G.III,8,109-116; G.IV,9; H.CP,21; G.P.I,31,70,88)
중립국은 다음의 수단 방법에 의하여 분쟁의 제한과 통제에 기여할 수 있다.
1) 충돌상태에 불개입

2) 교전국의 주민과 문화재 등의 물건에 우호적인 직접적 행동(예컨대 이익보호국, 의료수단, 구조활동)이나 타국 행동의 지원 (예컨대 구조를 허용하거나 용이하게 함)
3) 비군사적인 목적으로 교전당사국를 중립국의 영역내에 받아 들임 (예컨대 군함의 수선, 부상자의 수송, 중립지역내에 교전국 전투원 의 억류)
4) 평화의 회복이나 무력충돌상태의 완화를 위한 직접 간접의 지원
5) 중대한 전쟁법 위반을 억제하기 위하여 교전당사국와 협조

250. 중립법,중립정책
각 중립국의 중립법과 중립정책은 교전당사국과 군대에 관하여 중립국가 및 군대의 지위나 행동을 지배한다.

251. 중립안보 정책의 원칙
전략적 판단에 기초한 한 국가의 안보정책은 중립국가로 하여금 평화의 회복과 무력충돌의 완화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

252. 국가 안보정책상의 직접적 행동
중립국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행동할 수 있다.
1) 교전당사국 사이에 깊은 배려 및 "알선"(예컨대 외교관의 활동)을 통하여,
2) 제3국이나 단체 또는 군대가 무력충돌에 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253. 국가 안보정책상의 간접적 행동
중립국은 다음의 경우에 간접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1) (예컨대 유엔이나 지역기구 등) 국제적 기구의 활동에 가입하여,
2) 적대국 사이에 배치되도록 (예컨대 완충지역내에서의 유엔군 및 평화선에서의 감시활동을 위한 업서버) 자국의 군사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제 4 장 무력충돌후의 조치

제 1 절 정상상태의 복구

254. 원칙

무력충돌이 종료한 후 즉시 민간주민의 정상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은 전략적 목표이다 (예컨대 사람과 물건의 정상위치로의 복귀, 주민의 재입주, 우선순위에 따른 재산의 수리, 필요한 주민의 구조, 공공서비스의 재건 등).

255. 군대의 협조

군대는 민간주민의 정상상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조하여야 한다 (예컨대 지뢰의 제거, 수송수단의 지원, 구조활동 등).

제 2 절 사람과 물건의 송환 및 석방

256. 포로의 송환 (G.III,118)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하면 포로는 지체없이 석방, 송환되어야 한다. 교전당사국 사이에 특약이 없는 경우에 억류국은 지체없이 자체적인 송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57. 민간인 억류자의 송환 (G.IV,46,133)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민간인의 억류는 중단되어여야 한다.

258. 형사소추 및 처벌의 예외 (G.III,119; G.IV,133)

중범죄의 혐의로 소추중인 사람은 그러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벌이 완료될 때까지 억류될 수 있다. 이미 중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도 같다.

교전당사국은 진행중인 소추가 종료되거나 복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억류되는 자의 이름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59. 문화재 (H.CP.P,1)

전쟁중 이전된 문화재는 종전에 위치하던 국가로 되돌려져야 한다.

제 3 절 실종자 및 사망자

260. 실종자 (G.III,119; G.IV,133; G.P.I,33)

각 교전당사국은 상대방에 의하여 실종된 것으로 보도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수색하여야 한다. 그 경우 상대방은 수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종자에 관한 모든 관련자료를 알려주어야 한다.

261. 사망자의 묘지 (G.III,120; G.IV,130; G.P.I,34)

사망자의 묘지는 어디에 위치하든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한 묘지에의 접근은 용이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262. 유품과 유골의 반환 (G.III,120; G.IV,130; G.P.I,34)

사망자의 유품과 유골 및 소지품의 본국으로의 반환은 용이하여야 한다.

제 3 편 지휘책임

서 론

이 편에서는 각급 지휘관이 그 지휘영역내에서 가지는 전쟁법 준수보장을 위한 일반적 책임과, 특수한 상황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지는 전쟁법의 교육훈련, 조치에 대한 계획 및 사전대비 등의 특별책임에 관하여 다룬다.

제 1 장 **일반적 책임**은 군사작전에서의 전반적 책임과 전쟁법과 관련하여 모든 지휘관이 가지는 책임에 관한 것이다.

제 2 장 **전쟁법의 교육훈련**은 피교육자의 필요에 대응하는 교육목적 및 교육방법과 실제적인 권고사항에 관한 것이다.

제 3 장 **조직**은 작전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람과 물건, 군대와 민간당국에 관하여 취해질 일반 및 특별 조치에 관한 것이다.

제 4 장 **특수한 상황**은 매우 상이한 군대간에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과 이례적 상황 및 이례적으로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 관한 것이다.

제 1 장 일반적 책임

제 1 절 군사작전에 대한 전반적 책임

263. 원칙

군사작전에 참가하는 모든 군대의 지휘관은 전쟁법의 준수보장에 대한 일반적 책임을 가진다.
상황에 따라 그는 참모총장이거나, 지역사령관 또는 광범한 지역에서 독자적 임무를 수행하는 지휘관일 수도 있다.

264. 지리적 범위 (H.IV,서문;G.P.I,86,87)

지휘관의 일반적 책임은 군사작전과 이동 및 주둔이 행해지는 모든 육지와 해역 및 공중에까지 미친다.

265. 군사적 범위 (H.IV,서문; G.P.I,1,86,87)

지휘관의 일반적 책임은 모든 지휘계통과 각종의 철수단계에까지 미친다.

266. 민간범위 (H.IV,서문; G.P.I,1,58)

지휘관의 일반적 책임은 전쟁법상의 요청에 관한 한 민간분야에까지 미친다. 이는 특히 민간당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그러하다.

267. 특수한 상황 (G.I,45; G.II,46; G.P.I,86,87)

일반적 지휘책임을 보유하는 자는 항상 특수한 상황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예컨대 상이한 군대간의 전쟁, 이례적 상황에서의 작전, 이례적인 보급 및 철수상황 등; 제4장 참조).

268. 특수한 상황에서의 부하에 대한 지침 (G.P.I,87)

다음을 위하여 특수한 상황에 관하여는 부하에게 적절한 지침 (예컨대 교전규칙)이 하달되어야 한다.

1) 통일적 작전이나 행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2) 부하지휘관이 (특히 독자적 임무를 부여받은 경우)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 2 절 각 지휘관의 책임

269. 원칙 (G.I,1; G.II,1; G.III,1; G.IV,1; H.CP,4; G.P.I,1)
전쟁법 준수는 명령과 규율의 문제이다.
명령과 규율로써 전쟁법은 모든 상황에서 준수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270. 예방 (G.P.I,87)
지휘관 자신은 다음의 상황을 보장하여야 한다.
1. 그의 부하가 전쟁법상의 의무를 숙지할 것
2. 전쟁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

271. 통제 (G.P.I,87)
지휘관은 그의 부하가 전쟁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272. 전쟁법 위반 (G.P.I,87)
지휘관은 전쟁법 위반시에는 그 위반행위가 중지되고, 그에 대하여 징계와 처벌이 가해진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273. 부작위 (G.P.I,86)
지휘관의 책임은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된 전쟁법 위반에 대하여도 미친다.

제 2 장 전쟁법 교육훈련

제 1 절 교육훈련원칙

274. 목적 (G.I,1; G.II,1; G.III,1; G.IV,1; H.CP,1; G.P.I,1)
전쟁법 교육훈련의 전반적 목표는 모든 군대요원이 그의 직무나, 시간, 위치, 상황에 불구하고 전쟁법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보장하려는 데 있다.

275. 교육훈련의 책임 (G.I,47; G.II,48; G.III,127; G.IV,144; H.CP,25; G.P.I,83,87)
전쟁법은 군사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지휘관은 그의 지휘권의 영역범위내에서 전쟁법을 교육훈련할 완전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전쟁법의 교육훈련은 지휘활동의 필수불가결한 일부이다.

276. 알아야 할 필요성에 관한 우선순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교육할 수는 없다. 교관은 피교육자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만 교육하여야 한다.
알아야 할 필요성은 알아서 좋은 것보다 우선한다.
모든 지휘관은 부하가 필요로 하는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277. 통합훈련
전쟁법의 교육은 통상적인 교육훈련에 통합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통합적인 교육에는 특별한 시간이나 자료를 요하지는 아니하나, 피교육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요하다.

278. 전투요건
실제 전투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올바른 행동에 기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쟁법에 관한 교육훈련은 기본교육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

279. 주입식 강의의 예외성
주입식 강의교육은 서론부분에 대한 것이거나 수강자가 수동적일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야외훈련후나 점식식사후에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280. 능동적 언어의 사용
임무는 군사행동으로 나타나고, 군사행동은 능동적이다. 따라서 군사행

동에 이르는 언어도 능동적인 것이어야 한다.
종종 전쟁법에서 수동적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식으로). 그러나 이러한 명령은 능동적인 것으로 바뀌어 지시되어야 한다.

281. 기준의 선정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쟁법 교육훈련의 결과는 사전에 확립되고 측정가능한 기준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한다.

제 2 절 전쟁법 교관

282. 원칙
통상적으로 상급자가 그 부하에 대한 교관이 되듯이 전쟁법 교관도 상급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지휘관은 자기자신 및 부하와 관련있는 전쟁법분야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83. 사병이나 하사관 및 초급장교에 대한 교관
사병이나 하사관 및 소대장 등의 초급장교를 교육하기 위하여는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명령과 규율의 원칙, 상식 및 수단의 경제성 등이 종합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작전 및 행동 등에 대한 적절한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

284. 고급장교와 전문가에 대한 교관
중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이나 참모 그리고 전문가를 위한 교육훈련에는 적절한 전쟁법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 경우 상급자는 자신이 교관이 되기에 앞서 전쟁법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285. 상급자에 대한 법적 조언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급자는,

1)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2) 이론적 교육훈련에 법무관의 참여를 모색하거나
3) 통상적인 참모활동에 법무관을 참여케 할 수 있다 (예컨대, 특별히 보호되는 물건에 관하여 자문을 얻기 위하여 명령이나 지침을 기초 내지 검토하는 데 참여시키는 것 등).

제 3 절 주요 훈련수준 및 범위

286. 개별 전투원
개별 전투원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교육은 자동적인 반응이 나오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한 자동적 반응은 야전교육 및 통상적인 개별훈련에 의하여 체득되어야 하고, 그 훈련도는 개인이나 분대, 소대 기타의 전투훈련에서 확인, 평가되어야 한다.

287. 분대, 소대, 중대 등의 훈련
중대단위 이내의 전쟁법 교육훈련은 개별적 전투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유사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모든 구성원은 자기의 기능에 맞게 주어진 상황에서 행동하고 대응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하사관과 장교는 적절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88. 지휘관
각자 지휘권 범위내에서 전쟁법 준수의 완전한 책임을 부담하는 지휘관은 또한 자신의 부하에 대하여 교육을 할 수 있을 만큼 교육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의 중점은 전투행위에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 및 후방문제에 관하여도 전쟁법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89. 참모
참모요원의 주된 책임은 그들이 관여하는 명령과 지시가 전쟁법에 합당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있다.

참모요원은 참모활동에 있어 전쟁법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290. 고급참모
고급참모진에 있어서의 전쟁법의 중점은 합동작전에 주어진다(보병, 포병, 기갑, 공군 및 방공이나 해군 등과의 합동작전).
법무관을 이용할 수 있을 때는 그들을 참모업무에 참여시켜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업무에 이용하여야 한다.

291. 특수한 기능
예컨대 법무관이나 군의관 기타 군수 전문가들처럼 특수한 기능을 가진 군사요원은 그들의 업무분야에 관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292. 특수한 상황
다음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는 지휘관은 특별한 지침을 발하고 적절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독자적 임무를 지닌 특공대나 기타 소규모 단위부대
2) 특수한 여건에서의 전투
3) 상이한 군대간의 전쟁 (예컨대, 현대식 고급병기를 지닌 군대와 다소간에 원시무기로 무장한 조직집단간의 전쟁)

제 4 절 참고자료

293. 중대급 단위부대내의 교육
중대급 단위부대의 지휘관은 전투행위수칙을 실행토록 하여야 한다.

294. 지휘관에 대한 교육
지휘관에 대한 교육훈련의 보조자료로는 지휘관을 위한 요약집이 이용될 수 있다(이 책의 마지막 부분 참조).

295. 참모요원이나 기타 전문가에 대한 교육

참모요원이나 기타 전문가를 위한 교육자료로는 지휘관을 위한 요약집과 이책의 관련부분이 이용될 수 있다.

296.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모든 수준 및 범주의 교육에 추천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조직

제 1 절 조직원칙

297. 원칙 (G.P.I, 57,58)
지휘관은 조직에 관한 두가지 형태의 문제를 구별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1) 군사지휘에 의한 조치
2) 민간당국이나 민간인과의 협동에 의한 조치 또는 그들만의 조치

298. 체크 리스트
지휘관은 전쟁법 및 그 실제적 적용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조직상의 문제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299. 권한의 설정 (G.P.I,87)
지휘관은 조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급기관이나 상급지휘관에 의하여 달리 정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권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 2 절 작전 및 지리적 상황

300. 원칙 (H.IV.R,23,25; G.P.I,48)
작전행위나 전투행위의 양자 모두에 있어서 모든 지휘관과 개별 전투원의 주된 목표는 민간인 및 민간목적물, 전투원 및 군사목적물을 항상 구분하는 것이다.

후방지역을 향한 지휘관의 조치들은 점차 조직적 성격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01. 보급
지휘관은 보급에 관한 군사당국과 민간당국의 권한에 관하여 명확한 구별을 해 주어야 한다(예컨대, 수송중 보급기지내나 인근에서 직접 조달을 하는 경우).

302. 후송원칙
후송을 위한 일반적 계획이 확립되어야 하며, 적절한 민간당국과의 협력하에 모든 후송계통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발령되어야 한다 (예컨대, 포로에 관한 계통, 의무후송계통, 개인의 물건 및 유류품에 대한 인적 계통).

303. 후송에 필요한 병력의 보강
지휘관은 부하를 보강하여 그들로 하여금 후송에 관한 임무를 완수하고, 적절한 후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04. 후송계통
하급 및 최하급 수준에서의 후송은 지휘체계를 따른다.
일정한 후송계통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사람과 물건의 후송은 적절한 계통을 따라 진행된다.
전술적 상황이 허용되는 한 즉시 포로와 의료의 후송계통은 군사목적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

305. 특수한 상황에서의 후송 (G.P.I,41)
지휘관은 특별한 상황에서의 후송을 위하여 명령이나 지침을 발하여야 한다. 그러한 명령이나 지침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중점이 주어져야 한다.
1) 소규모 단위부대가 상급부대와 멀리 떨어져 작전하면서 적절한 후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2) 후송경로가 육지와 해양 또는 공중을 통과할 때

306. 후방지역의 개념
전쟁법상 "후방지역"이란 정확한 작전상 의미나 확정적인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후방지역"이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의 후방, 보다 일반적으로는 그 외의 지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컨대, 전투에 가담하고 있는 제1급 대대의 후방지역, 고립된 전투중 정찰대가 위치한 지역의 바깥지역이나 매복조가 위치한 곳의 바깥지역, 해공군 합동작전이나 육해공 합동작전이 진행중인 지역의 외곽지역 등).

307. 후방지역: 포로수용소와 병원의 지리적 분배
일반계획은 포로수용소의 지리적 배치와 군병원의 지리적 배치를 규율한다. 어디에서든 적절한 경우에는, 선두의 통과수용소와 후미의 종착수용소나 병원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

308. 후방지역: 포로수용소나 병원의 군사목적물로부터의 이격 (G.I,19; G.III,23)
포로수용소와 군병원은 군사목적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 (예컨대, 소규모 보병부대가 아닌 대규모 군사목적물로부터는 더 멀리 떨어져야 한다).

제 3 절 특별히 보호되는 사람과 물건

309. 원칙
특별히 보호되는 사람과 시설 및 수송에 관련이 있는 일반적 행동이나 특히 표시된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 철회에 관한 행동은 군사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통제되어야 한다.

310. 군 의무지원: 식별
군 의무지원에 대한 식별방법은 다음과 같이 조직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1) 식별표지: 크기와 가시성(可視性), 특히 전방지역에서의 은폐 필

요성 및 수송필요성의 감안

2) 식별신호와 전파통신: 권한부여, 전략목적을 위한 제한과 허용, 전투 군대 특히 공군과의 연계

311. 군 의무지원: 무기의 사용

군 의무지원이나 기타 군 의무시설과 의무수송을 보호하는 사람의 무기사용은 통제되어야 한다 (전투원으로의 오인 방지 필요, 의무설비나 수송의 크기에 따라 좌우되는 무장요원의 비율).

312. 군 의무지원: 일시적 수단

일시적으로 의무요원이 되거나 의무수송을 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반적 지침이 발령되어야 한다.

1) 그러한 요원과 수송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
2) 이용의 상태: 양도기간, 특별한 표시나 신호의 사용, 적에 대한 적절한 통보

제 4 절 다국적군과 그에 따른 문제

313. 원칙

군대가 승인하에 외국에 위치하거나 전쟁에 가담하고 있는 경우에, 그 국가영토에 적용되는 법조문은 합당한 범위내에서 유추에 의해 주둔국 군대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실제적 협력관계를 위해서는 특별한 협정이나 상세한 원칙과 같은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외국군의 지위에 관한 특별협정).

314. 실제 예(例)

외국영토에서의 존재상태는 다음에 의하여 결정된다.

1) 영토국내에 동맹국의 군대의 존재
2) 여러 국가의 군대가 단일한 지휘하에 동맹관계에 들어감
3) 1개국 또는 그 이상 국가의 영토에 연합군의 설치

315. 결정과 조치

외국영토내에 군대의 존재를 정하는 기본협약 (예컨대, 외국군의 지위에 관한 협약)외에도, 다음과 같은 결정과 조치들이 군사지휘체계와 관련 민간당국간에 취해져야 한다.

1) 복종과 지휘의 계선
2) 전쟁법이 적용되는 인적 물적 분야 (특히 관계국들이 모두 같은 조약의 체약국이 아닐 경우)
3) 적용되는 행정법규
4) 적용되는 형법 및 징계권
5) 다국적군 참모내의 전쟁법준수에 관한 책임
6) 군지휘부와 민간당국간의 협력조치를 위한 권한

제 5 절 민간당국과의 협력

316. 원칙 (G.P.I,58)

군사작전과 군대의 존재로 인하여 민간인이나 민간목적물에 대해 야기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휘관은 민간당국과 작전상황에 적합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모색하여야 한다.

317. 목적 (G.P.I,58)

이 경우 협력관계로 인하여 민간당국이 다음과 같이 그의 통제하에 있는 민간인과 민간목적물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와 사전 주의조치들이 금지되어서는 아니된다.

1) 일반적인 민간인과 민간목적물 (예컨대, 철수나 후송, 피난민수용 소나 경고 등의 준비)
2) 특별히 보호되는 민간인과 민간목적물 (예컨대, 충분한 크기와 가시성이 있는 식별표지, 중요목적물의 주변표시, 목적물의 비적대적 사용의 보장)

318. 민간의무지원: 원칙

군 의무지원과 민간 의무지원 사이의 권한 및 그들의 협력관계는 정확

히 설정되어야 한다.
군 및 민간 양측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모든 철수단계에 적용될 수 있는 후속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319. 민간 의무지원: 지휘책임
다음에 대하여는 정확한 지휘책임이 설정되어야 한다.
1) 군사적 민간적 수단이 합동으로 개입되는 경우
2) 민간수단에 의하여 보강된 군의무시설
3) 군사수단에 의하여 보강된 민간의료시설

320. 민간 의무지원: 상세한 조치들
협력관계는 특히 다음의 점들에 관하여 상세하게 조직되어야 한다.
1) 식별표지와 필요한 경우 식별신호의 사용
2) 무기의 사용
3) 순전히 군사적인 경우 (예컨대, 전쟁포로와 그들의 막사)
4) 규율
5) 보급 (민수용(民需用) 및 군사용)
6) 하역지역 (민수용 및 군사용)

321. 민방위
민방위를 위한 국내의 약정에 의하여 군대와 민방위당국간에 협력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협력관계를 위한 일반지침 (일반적인 경우, 특별한 경우 및 상하관계의 경우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결정할 권한)
2) 민방위 임무를 위한 단위부대의 할당: 식별표지나 특별히 합의된 식별신호, 무기의 사용 그리고 민방위활동이 진행되는 동안의 행동에 관한 명확한 지침

322. 문화재
군지휘부와 민간당국간에는 문화재의 적법한 철수에 관하여 반드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일반적 지휘책임을 보유하는 자는 다음의 문화재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발령하여야 한다.
1) 일반적 보호를 받는 문화재
2) 특별한 보호를 받는 문화재
지역관할부대장과 민간당국은 특별히 위험한 위치에 있는 문화재(예컨대 군사목적물에 매우 근접해 있는 문화재)에 관한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23. 위험한 물리력을 가진 시설
댐이나 제방 또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민간당국과의 협력은 민간인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민간인의 사전 후송, 댐이나 제방이 보유하고 있는 물의 수위를 낮추는 일 등).

324. 경찰기능
국가경찰조직에 따라 군헌병당국(또는 경찰기능을 가진 지휘권 보유자)과 민간당국(및 또는 경찰)간에는 협력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군지휘관과 민간당국은 협력 및 예속관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규율한다.

325. 군사적 지원
긴급상황에 있어서는 작전상황이 허용하는 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예컨대, 일반적 지원, 의무지원, 민방위, 문화재보호).

제 4 장 특수한 상황

제 1 절 상이한 군대간의 전쟁

326. 원칙

상이한 군대간의 전쟁 (동등하지 않거나 불균형적인 전쟁)이란 맞선 적이 매우 다른 전술을 구사하거나 전투수단을 채택하는 경우의 전쟁을 말한다.

전쟁법이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휘관은 적절한 행동에 의하여, 야기되는 간격을 메우도록 하여야 한다 (예컨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수색, 참전규칙, 특별지침 등).

327. 필요한 정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수색은 다음의 상황을 알기 위한 것으로 한정된다.

1) 적의 조직 (예컨대, 전투부대의 유형과 규모, 군수체계)
2) 적의 무장상태 (예컨대, 무기의 유형, 직접만든 특수무기)
3) 적의 전술 (예컨대, 제복착용 유무, 무기의 공개적 휴대 여부, 기망이나 책략 등의 사용 - 통상 매복이나 사보타지 또는 침투 등 소규모 작전의 경우)
4) 작전환경 (예컨대, 주민의 우호성 및 적대성 여부, 이례적 자연환경, 기후, 식물의 성장 등)

328. 적절한 행동

지휘책임 있는 자는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군대를 위하여 야기될 수 있는 전쟁법적 문제점을 검토평가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전쟁법에 합당한 작전과 전투행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작전과 행동은 일반 전투수칙이나 특별지침으로 발표되어야 한다.

329. 해결해야 할 주요문제 (G.P.I,48)

해결해야 할 주요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전투원과 민간인, 그리고 군사목적물과 민간목적물간의 명확한 구별과 그러한 구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권고
2) 민간인이나 병자 또는 체포된 적전투원을 만났을 때의 체계적 조치나 행동
3) 다양한 후송경로의 계획 및 조직

4) 일반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보급 및 병참계획 수립 (예컨대, 군수계통의 분리)
5) 작전개시에 앞서 적절한 사전훈련 실시

제 2 절 특수한 경우의 작전

330. 적 통제지역내에서의 전술작전

적 통제지역내에서 본대와 별개로 전개되는 소규모부대 작전(순찰, 특공대 기습)은 작전행위에 대한 정확하고 특수한 지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자기자신이나 적 부상자, 사망자, 죄수, 민간지역과의 접촉, 군수 등).

지시된 행동은 임무수행중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예컨대, 접적가능한 지역에서의 임무와 그러한 가능성이 사라진 후의 임무 재인식).

331. 긴급상황

적에게 체포될 가능성이 있는 부대소속원(예컨대, 재난항공기 승무원)에 대하여는 체포될 경우의 행동요령(군사적 가치있는 문서의 처리, 탈출하는 것이 의무인가 아닌가, 체포된 경우의 권리, 적의 신문에 대한 답변항목 등)에 관하여 지침이 하달되어야 한다.

제 3 절 특수한 보급상황 및 후송 상황

332. 보급

기본적으로 직접조달에 의존하여야 하는 부대 (예컨대, 고립된 위치로 인하여)에 대하여는 민간인이나 민간목적물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특별지침이 하달되어야 한다 (예컨대, 조달체계 수립권, 조달의 장소와 조건 등).

333. 후송 (G.P.I,41)

고립되어 행동하기 때문에 포획한 적을 후송시키는 작전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소규모 부대에는 정확한 행동지침이 하달되어야 한다 (예컨대,

후송수단과 후송요원의 지원요청, 후송가 가능할 때까지의 억류조건, 석방시 자신과 석방된 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334. 장거리 보급 및 후송경로

다양한 통과장소와 수송단계에 따라, 수송수단을 포함하는 장거리 보급 및 후송경로나 계통을 위하여 지휘책임 및 수송책임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의무지원을 위한 전술, 군수 및 의무지휘관간의 협력, "의료임무"의 중요성과 그 기간 등).

제 4 편 지휘권 행사

서 론

이 편에서는 지휘관 및 참모의 통상적인 논리구조와 행동양식에 전쟁법적 관점을 소개함으로써, 임무에서 시작하여 통제조치로 끝나는 의사결정과정을 다룬다.

제 1 장 임무에서는 군사적 상황에 따라 조건지워지는 지휘권행사의 개시점에 관한 것이다.

제 2 장 의사결정 요소에서는 정보수집을 위한 탐색과 전쟁법상 요구되는 사전 주의사항, 전술적 상황 그리고 임무로부터 나오는 군사적 필요에 관한 것이다.

제 3 장 의사결정에서는 시간적 요소, 지휘관이 정한 평가, 그의 결정, 부하들로 인하여 초래되는 임무 및 민간당국과의 협력에 관한 것이다.

제 4 장 시행의 통제에서는 부하들에 의한 적절한 임무수행의 보장 및 그 임무수행 중에 있을 수 있는 조정(調整)을 위한 지휘관의 조치에 관한 것이다.

제 1 장 임 무

335. 원칙 (H.IV,서문; G.P.I,87)
지휘권 행사는 전쟁법에 적합한 임무에 의하여 개시된다.
최고위급에서의 임무는 전략적 목표에 상응한다.

336. 통상적 지휘절차 (H.IV,서문; G.P.I,87)
지휘권 행사에는 전쟁법존중 측면이 결들여진 통상적 지휘절차가 뒤따른다.

337. 존중 (G.P.I,43,87)
임무는 존중된다.
임무를 부여받은 부하로서는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명령과 규율의 요건이다.

제 2 장 의사결정 요소

제 1 절 정보수집

338. 원칙 (H.IV.R,29; G.P.I,46)
전쟁법에 부합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탐색은 허용되는 방법과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 사이의 구별에 기초한다.

339. 수집허용 (H.IV.R,29; G.P.I,46)
군사적 가치있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과 같은 수집행위는 적법한 것으로서 허용된다.
1) 제복을 입고서 탐색하거나,
2) 전투원의 신분을 숨기지 아니한 경우 (예컨대, 위장복을 입지 아니한 경우).

340. 수집제한: 간첩행위 (H.IV.R,29; G.P.I,46)

군사적 가치있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의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과 같은 수집행위는 위법하다.
1) 위장된 행동에 의한 경우
2) 고의적으로 비밀스런 방법에 의한 경우
간첩은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간첩행위를 하다 체포된 전투원은 포로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고 처벌될 수 있다.

341. 수집제한: 적의 전투원 (G.III,17)
체포된 전투원은 심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신분에 관한 것만 답변할 의무가 있다.

342. 수집제한: 적의 민간인 (G.IV,31)
적의 민간인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강요당하거나 제3자로부터 정보를 얻어 내도록 강요당하여서는 아니된다.

343. 수집제한: 답변의 거부 (G.III,17; G.IV,31)
답변을 거부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협박이나 모욕 또는 어떠한 유형의 불유쾌하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344. 수집금지: 의무수송 (G.II,34,35; G.P.I,23,28)
의무수송은 정보자료의 수집 또는 제출에 이용되거나 그러한 목적에 사용되기 위한 장비를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절 전쟁법상 요구되는 주의사항

345. 원칙 (H.IV.R,23; G.P.I,57,58)
주의사항의 목적은 민간인의 사상자와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불가피하게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데 있다.
주의사항에는 비례의 원칙이 포함된다(제5편 1장 1절 참조).

346. 적용 (G.P.I,57,58)

진행중인 작전과 군대의 이동 및 위치에 관련하여 반드시 주의사항이 사전에 하달되어야 한다 (예컨대, 민간인 지역으로부터 군사목적물의 분리, 군사목적물과 민간목적물간의 충분한 거리의 유지, 진격로나 방어지역내에 있는 민간목적물로부터의 일정 거리 유지).

제 3 절 전술적 상황

347. 원칙 (G.CW.P.II,3; G.CW.P.III,1)
전술적 상황은 인도주의적 고려사항이나 군사적 고려사항을 포함한 그 당시의 모든 여건을 포함한다.

348. 인도주의적 고려사항
인도주의적 고려사항이란 군사작전으로 민간인이나 민간목적물에 야기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대피시설이 있는/또는 없는 민간인 밀집지역내나 인근에서의 전투원이나 군사적 수단의 존재).

349. 군사적 고려사항
군사적 고려사항이란 임무로부터 나오는 자기자신이나 적의 작전 및 상황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공격이나 방어, 전투수단 및 이용되는 전술, 관련 전쟁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군사적 필요성).

350. 전술적 상황에의 복종: 원칙과 예시
특정한 작전이나 행동의 수행은 전술적 상황에 따라야 한다.
그러한 작전이나 행동은 다음의 경우에 수행되어야 한다.

1)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시점이나 그 시점까지"(예컨대, 전투행동의 개시에 앞선 민간인에 대한 경고)
2)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곧바로"(예컨대, 전투지역내에서 의무요원이나 민방위요원에 의한 수색과 간호)
3)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예컨대, 산악지역에서 도로에 불가피하게 군사목적물이 민간목적물과 인접해 있는 경우)

351. 전술적 상황에의 복종: 적용
전술적 상황에 복종하는 경우에도 제한적인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는 지시된 조치나 행동이라도 부여받은 임무와 자신의 안전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4 절 군사적 필요성

352. 개념 정의
"군사적 필요성"이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정당화시키는 원리를 말한다.

1) 전쟁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조치
2) 적을 제압하는 데 필요한 조치

군사적 필요성이란 전쟁법을 어겨도 정당화될 수 있는 원리는 아니다.

353. 제한
군사적 필요성이라는 개념에 적절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오늘날 조약법으로 확립되어 있다.
그러므로, 군사적 필요성은 전쟁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그 범위내에서 원용될 수 있다.

354. 긴절한 군사적 필요성: 원칙
전쟁법은 군사적 필요성이 "긴절"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 보호조항의 일부를 실효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한 실효조항은 임무의 완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되는 지위가 저하 또는 포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적 필요성이라는 주장은 오직 임무의 완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355. 긴절한 군사적 필요성: 예시 (H.IV.R,23; G.I,33; G.IV,53; H.CP,4,11; G.P.I,54,62)
긴절하거나 이와 유사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하여 보호조항이 실효(失

效)되는 구체적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목적물의 파괴나 장악 ("긴절한" 군사적 필요성)
2) 점령한 고정 의료시설의 사용 ("긴급성")
3) 점령지에서의 파괴활동 ("절대성")
4) 일반적 보호를 받는 문화재에 대한 공격면제 철회 ("긴절성")
5) 특별한 보호를 받는 문화재에 대한 공격면제 철회 ("불가피한" 필요성)
6) 주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목적물의 파괴: 적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서 오직 자기 영토내에서만 가능 ("긴절성")
7) 민방위 조직에 의한 군사업무의 수행 ("긴절성").

군사적 의미에 있어서 "긴절성","긴급성" 또는 "절대성"이란 용어 사이에 실제적 차이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 보호를 받는 문화재에 대한 공격면제의 철회에 요구되는 군사적 필요성의 "긴절성"과, 특별한 보호를 받는 문화재에 대한 공격면제의 철회에 요구되는 "불가피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의사결정

제 1 절 시간적 요소

356. 원칙 (G.P.I,57)

시간적 요소 역시 전쟁법의 효과적인 준수와 관련하여 볼 때 결정적인 요소이다.

357. 시간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계획된 작전 (G.P.I,57)

작전을 준비할 때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전쟁법적 고려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358.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임기응변적 작전 (G.P.I,57)

장시간의 준비없이 군대가 작전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통상 전술적 사고방식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지휘관은 전쟁법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는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전쟁법과 관련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예컨대, 최후의 순간까지 민간인 사상자나 재산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재조정하여야 한다).

제 2 절 평가

359. 원칙

부여된 임무를 토대로, 가용한 정보와 전쟁법상 요구되는 주의사항 및 전술적 상황과 군사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휘관은 스스로 개략적 판단을 하여야 한다.

지휘관은 자신이 취할 가능성과 적이 취할 가능성을 평가하고 비교하여야 한다.

360. 적이 취할 가능성있는 작전

적이 처한 상황과 취할 수 있는 작전은 그들의 군사적 측면과 민간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예컨대, 부대위치, 민간환경, 해당지역 민간주민 비교 부대의 강약, 이동 및 전투행동 가능성과 민간지역에 미치는 영향).

361. 자신과 적이 취할 가능성있는 작전

적이 처한 상황과 취할 수 있는 작전은 양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포함한 아측(我側)의 가능한 작전과 비교되어야 한다 (예컨대, 가능한 또는 실제의 군사적 필요성, 가능한 또는 필요한 주의사항).

362. 부하들이 취할 가능성있는 행동

부하들이 취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은 검토되어야 한다. 만일 부하에게 부여된 임무가 그에게 너무 많은 법적 제약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때에

는 그 임무는 수정되어야 한다.

제 3 절 결정

363. 평가
지휘관은 자신의 판단이 초래할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364. 최종 비교형량
지휘관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1) 그의 임무로부터 초래되는 제약 (특히 군사적 필요성으로부터)
2) 전쟁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주의사항
3) 작전에 소요되는 예상비용 (예컨대, 예상되는 군사적 이익과 관련하여 자기 부대의 사상자 및 민간인 사상자와 재산손실의 가능성)

365. 주의사항 (G.P.I,57,58; G.CW.P.II,3; G.CW.P.III,1)
지휘관은 있을 수 있는 모든 주의사항을 채택하여야 한다.
"있을 수 있는 주의사항"이란 전술적 상황 (즉 인도주의적 및 군사적 사항을 포함한 당시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주의사항을 말한다 (제4편 제2장 제3절 참조).

366. 긴절한 군사적 필요
긴절한 군사적 필요라는 예외적 상황에 의존할 경우에, 지휘관은 그러한 군사적 필요성이 너무 많이 원용되면 전쟁법상 부여되는 각종 보호가 자동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에 결국 부하들의 군기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지휘관은 긴절한 군사적 필요를 통상적이 아닌 예외적 의지수단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367. 해결방법의 선택: 원칙 (G.P.I,57)
최종 비교형량을 통하여 지휘관은 그의 결정에 이르게 된다.
지휘관은 자기의 임무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인의 사상자와 재산손실을 가장 적게 초래한 해결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예컨대, 보다 많은 이동과 책략의 사용 및 화력의 억제, 민간 생활여건에 보다 적은 위험을 초래할 작전시간의 선택).

368. 해결방법의 선택: 복합적 조치 (G.P.I,57)
지휘관은 자신의 결정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특히 군사적 필요성이 개입되는 사건에 있어서) 감소시킬 조치들이 그가 선택한 해결방법과 결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 4 절 부하에 대한 임무부여

369. 원칙
부하에게는 오로지 그들이 완수할 수 있고 전쟁법에 합치되는 임무만 주어져야 한다.

370. 구체적인 사항
부하에게 부여되는 임무에는 전쟁법을 준수를 보장하기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컨대, 경고, 적절한 기망수단).

371. 정보
명확성을 기하고 정보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급 지휘관은 정보수집(제4편 제2장 1절 참조) 및 기망 (제5편 제1장 5절 참조)에 관한 정확한 지침을 발하여야 한다.

372. 긴절한 군사적 필요
부하에 대한 임무에는 긴절한 군사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취할 조치와 전쟁법의 실효조항(失效條項)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컨대, 문화재에 대한 공격면제의 철회).

373. 적절한 경우에는 부하에 대한 임무에는 전쟁법에 합치하는 전투행위 원칙이나 지침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컨대, 상이한 군대간의 전쟁에 관한 상세한 규정).

374. 인접부대, 지원부대
전쟁법 존중에 관련된 경우에는 언제나 인접부대 및 지원부대의 임무와 상황에 관한 정보가 관계있는 부하에게 적절한 방법으로(예컨대, 임무 그 자체에 있어서나 특별한 명령이나 지침에 있어서) 전달되어야 한다.

제 5 절 민간당국과의 협력

375. 원칙
부하에게 주어진 임무는 민간당국과 그들의 협력관계를 규율한다 (예컨대, 관계 민간당국과 그에 상응하는 군지휘관).
주어진 임무에는 상급지휘관이 발령한 지침(예컨대, 현재의 작전절차)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세부 사항에 관한 것(예컨대, 관련 지역이나 부대에 관한 세부적 적용사항)도 포함된다.

376. 군대에 대한 발표 (G.P.I,57)
민간당국이나 민간주민에 대하여 취할 행동지침(예컨대, 민간당국에 대한 정보제공권의 부여, 정보수집이나 기망을 목적으로한 제한적 접촉)에 관한 지휘관의 지침은 부하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377. 민간인에 대한 정보제공 (G.P.I,57)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에, 지휘관은 향후 군사작전의 전개와 그로 인하여 예상되는 민간인 피해에 관하여 민간당국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78. 민간인에 대한 촉구발표 (G.P.I,57,58)
발표되는 정보에는 종종 민간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동이나 행위를 권유하는 경고(예컨대, 대피소를 찾거나 군대에 의하여 사용되는 일정지역이나 도로로부터 떨어져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제 4 장 시행의 통제

제 1 절 통제원칙

379. 원칙 (G.P.I,87)
통제는 지휘권 행사의 마지막 단계이다.
그 목적은 부하에게 부여된 임무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지휘관의 의도대로 명령이 시행되는 것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380. 명령과 규율 일반 (G.P.I,43,87)
통제는 명령과 군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통제를 통하여 지휘관은 필요한 경우에 부하의 행동을 교정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개입할 수 있다.

381. 전쟁법의 존중: 일반(G.P.I,87)
통제를 통하여 지휘관은 그의 부하가 맡은 바 책임범위내에서 전쟁법을 존중하고 그 준수를 보장하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다.

382. 전쟁법의 존중: 상세 (G.P.I,57,58)
전쟁법의 존중에 관하여 통제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과 관련이 있다.
1) 부하에 의한 정보와 기망조치의 사용
2) 민간인과 민간목적물 일반에 관한 주의사항과 조치들
3) 사람과 물건에 관한 기본적인 보호의 존중
4) 민간당국에 대한 구체적 조치 및 협력

제 2 절 시행중의 조정

383. 원칙 (G.P.I,57)
작전시행중 급박한 전투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조정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예컨대, 전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의료설비나 민간인이

발견된 경우에 화력집중지역 내지 공격방향을 유사한 다른 지역이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384. 사전에 계획된 작전 (G.P.I,57)
사전에 계획된 작전에 관한 조정에는,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계획에 대한 수정(예컨대, 다른 공격방향, 다른 접근로나 이동로, 작전개시의 연기)도 포함된다.

제 5 편 작전행위

서 론

이 편에서는 육전, 해전, 공전 및 합동작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을 공격과 방어 이동과 주둔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조항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전쟁법원칙과 작전행위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다룬다.

제 1 장 **작전행위 일반**은 행위원칙, 기망, 배제지대, 특별히 보호되는 물건과 지역, 그리고 주의를 요하는 민간당국과의 협력관계에 관한 것이다.

제 2 장 **공격행위**는 공격의 개념, 존중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제한 및 민간인과 민간목적물에 대하여 취해질 주의사항에 관한 것이다.

제 3 장 **방어행위**는 방어의 개념, 존중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제한 및 민
간인과 민간목적물에 대하여 취해질 주의사항에 관한 것이다.

제 4 장 **이동과 주둔위치**는 공격과 방어 이외의 모든 상황에서 존중되는 것에 대한 제한 및 주의사항에 관한 것이다.

제 1 장 작전행위 일반

제 1 절 행위원칙

385. 전쟁의 수단과 방법 (H.IV.R,22; G.P.I,35)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권리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386. 불필요한 고통이나 피해 (H.IV.R,23; G.P.I,35,57)
불필요한 고통이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적을 제압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폭력은 금지된다.

387. 군사분야와 민간분야의 식별 (G.P.I,48)
전투원과 민간인 그리고 군사목적물과 민간목적물은 언제나 식별되어야 한다.

388. 민간인과 민간목적물의 보호 (H.IV.R,23; G.P.I,57,58)
민간주민과 민간인 및 민간목적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그러한 주의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민간인 사상자와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피해를 극소화하려는 데 있다 (예컨대, 민간인 밀집지역에 대한 고려, 피난처의 가능성, 민간인들의 이동, 중요한 민간목적물, 작전시간에 따른 위험정도의 차이).

389. 비례성, 교전원칙 (H.IV.R,22,23; G.P.I,57)
비례성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군사작전으로 얻어질 예상결과에 비추어 볼 때, 민간인 사상자나 재산피해를 과도하게 야기하지 않는 행위는 비례의 원칙에 부합된다.
무제한적으로 민간인을 살상하거나 재산 등을 파괴하는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비례의 원칙을 원용할 수는 없다.
비례의 원칙에 따른 일반적 또는 개별적 교전지침이 부하들에게 하달되어야 한다.

390. 계획 (G.P.I,57)

민간인이나 민간목적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작전을 계획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민간인 보호조치도 계획단계에서 아울러 취해져야 한다.

제 2 절 필요한 정보

391. 원칙 (G.P.I,57,58)
지휘관이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는 적정(敵情)이나 주변여건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필요하다.
전쟁법에 합치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정보에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인들의 밀집
2) 군사목적물 주위의 민간인
3) 인가(人家)가 밀집한 지역(도시, 마을, 피난소)의 성격
4) 민간목적물 특히 특별히 보호되는 목적물의 존재 및 그 성질
5) 자연적 환경

392. 적용 (H.IV.R,29)
허용되는 방법과 허용되지 않는 방법을 식별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하여는 제4편 제2장 제1절을 참조하라.

제 3 절 전투수단

393. 원칙 (G.P.I,57)
전투수단은,
1) 민간인 사상자와 피해를 피하기 위하여
2)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상자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정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394. 일반적 금지 (G.P.I,35)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진 무기의 사용은 금지된다.

1) 과도한 피해나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무기
2) 자연환경에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무기

395. 특수한 무기
일부 무기는 특별조약에 의하여 규제된다 (부록I 참조).
이들 조약은 특별한 무기에 대하여 두 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다.
1) 그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무기 (부록I, 제2조 참조)
2) 그 사용이 일정한 조건하에 금지되는 무기 (부록I, 제3-5조 참조).

제 4 절 전투방법

396. 민간주민의 생존: 원칙 (G.P.I,54)
민간주민에 대한 기아상태의 야기는 전쟁방법으로 이용될 수 없다.
기아상태를 야기하기 위하여 민간주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대상을 공격, 파괴, 제거하거나 그 효용을 상실케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예컨대, 식량,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지역, 곡식, 가축, 식수 기구나 식수원, 관개시설).

397. 민간주민의 생존: 예외 (G.P.I,54)
민간주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1) 오로지 군대의 유지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경우
2) 직접적으로 군사작전의 지원에 이용되는 경우 (그러나 이로 인하여 민간주민이 기아상태에 이르도록 감소되거나 이동을 강요당하여서는 아니된다)
3) 침범에 대한 국토방위의 군사목적상 불가피하게 필요가 있는 경우

398. 테러 (G.P.I,51)
민간주민에 대한 공포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폭력행위나 협박행위는 금지된다.

399. 몰살위협이나 몰살명령 (H.IV,23; G.P.I,40)
적에게 공포를 주거나 그러한 계획하에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몰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 5 절 예상되는 기망효과

400. 원칙 (G.P.I,37)
지휘관은 임무완수를 위해 자기의 의도나 행위을 감춤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전쟁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허용되는 책략(策略)과 허용되지 않는 배신(背信)간의 식별을 준수하여야 한다.

401. 허용되는 기망: 전쟁계략 (G.P.I,37)
"전쟁계략" 또는 "책략"이란 배신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1) 적으로 하여금 오판에 이르도록 하거나
2) 적으로 하여금 부주의하게 행위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를 지닌 것을 말한다.
전쟁계략은 허용된다.

402. 허용되는 기망: 전쟁계략의 예 (G.P.I,37)
전쟁계략의 예로는,
1) (자연물이나 페인트, 그물, 연기 등에 의한) 위장
2) (유인 등에 의한) 과시
3) 시위나 위장작전
4) 역정보 또는 허위정보
5) (전자나 통신에 의한)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403. 제한되는 기망: 적국을 상징하는 표장 등의 사용 (G.P.I,39)
전쟁수행중 또는 군사작전을 감추거나 군사작전을 지원하거나 방해하기 위하여 적의 국기나 표장(標章)이나 복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404. 제한되는 기망: 군함의 기 (G.P.I,39)
원칙적으로 군함은 자국의 기를 게양한다.
전통적으로 군함은 전투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자국의 진정한 국기를 게양한 경우에는 전투중 어느 때고 위장된 기를 게양할 수 있었다.
요즘은 실제로 군함의 국적을 판단함에 있어 게양한 기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

405. 금지되는 기망: 중립국 표장 등의 사용 (G.P.I,39)
중립국의 국기나 표장 또는 제복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406. 금지되는 기망: 국제연합의 표장 등의 사용 (G.P.I,38)
국제연합으로부터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연합을 표시하는 표장의 사용은 금지된다.

407. 금지된 기망: 식별표지나 신호의 사용 (G.P.I,38)
다음의 것을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즉 권한없이 본래의 사람과 물건을 달리 표시하게 하는 것은) 금지된다.
1) 의료진의 표지나 신호
2) 민방위의 표지
3) 문화재의 표지
4) 위험스런 물리력을 가진 시설의 표지
5) 백기 (화평의 기)
6) 기타 국제적으로 공인된 식별표지나 신호 (예컨대, 무방비지역에 대한 비무장지대의 임시표지, 민방위를 위한 임시신호)

408. 금지되는 기망: 배신 (H.IV.R,23; G.P.I,37)
배신행위에 의하여 적을 살상하거나 포획하는 것은 금지된다.
"배신"은 적법한 보호의 위장하에 적대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409. 금지되는 기망: 배신의 예 (G.P.I,37)

다음의 행위는 배신의 예이다.
1) 화평의 기를 들고 협상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
2) 항복으로 위장하는 경우
3) 부상이나 병으로 전투력을 상실한 것으로 위장하는 경우
4) 민간인이나 비전투원으로 위장하는 경우
5) 국제연합이나 중립국의 깃발이나 표장 또는 제복으로 보호되는 지위에 있는 존재로 위장하는 경우

410. 금지되는 기망: 은폐 (G.III,23; G.IV,28; G.P.I,12,51)
전투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의무시설이나 의무수송 또는 민간인이나 포로의 수송으로 위장하거나 그들을 방패로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예컨대, 군사목적물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거나 군사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제 6 절 배제지대와 그 유사지역

411. 원칙 (Oxford,50; G.P.I,25,27)
교전당사국의 군대는 일정한 해역(중립국의 영해가 아닌)과 그 상공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그러한 영역의 범위는 군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영역은 배제지대나 그 유사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고 (예컨대, 군사지역, 금지지역, 전쟁지역, 작전지역), 그에의 접근은 제한될 수 있다.

412. 예 (Oxford,50; London.Decl,1-21)
배제지대나 그 유사지역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해양작전지대 (예컨대, 외국항공기나 함선의 접근이 금지됨)
2) 봉쇄지역 (예컨대, 특정한 해안지역이나 항구의 접근이 금지됨)

413. 중요도, 개전원칙, 한계설정 (London.Decl,1-9)
배제지대나 유사영역을 설정한 교전당사국은 그 중요성을 명확히 천명

하여야 한다 (예컨대, 중립국이나 비군사적인 적의 함선을 위한 경고). 배제지대의 크기, 주변경계와 그 존속기간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배제지대가 다시 상이한 하위 배제지대로(예컨대, 외부나 내부를 포함) 분할되는 경우에는 각 하위지대에 대하여 정확한 제한과 한계설정이 천명되어야 한다.
개전원칙은 부하들을 기속하여야 한다.

414. 정보 (London.Decl,11-12)
교전당사국들이나 중립국에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1) 배제지대나 하위 배제지대에 대한 제한 (예컨대, 외국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에 대한 절대적 출입금지)
2) 그러한 지대의 침입자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경고 없이 취해질 행위.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면, 침입자는 정지되어 심문을 받은 뒤, 선량하다고 인정되면 가던 길을 계속 가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제 7 절 특별히 보호되는 물건

415. 필요한 정보: 보호대상의 위치
지휘관은 정보기관을 통하여 자기의 작전영역내에 군사관련 특별보호대상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416. 필요한 정보: 보호대상의 명세표
지휘관은, 1) 크기에 있어서 중요하거나, 2) 위치상 특별히 위험스러운 특별 보호대상에 대하여는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여야 한다.

417. 취해져야 할 예방책
그렇게 얻어진 정보는 다음과 같은 예방책을 강구하게 만든다.

1) 선택가능한 해결책 (예컨대, 보호대상의 직접적 인근을 피하거나, 다른 수송로를 택하는 것)

2) 보호대상중 특별히 가치가 있으면서 위험에 빠진 부분에 대한 권고안
3) 보호대상과 그 관계자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표시의 권고(예컨대, 방어측에 의하여 지방당국에 직접적으로 하는 권고, 공격측이 적에게 직접 또는 시간이 있는 경우 중개자를 통하여 하는 권고)

제 8 절 보호지대

418. 사전에 계획된 보호지대 (G.I,23; G.I,Annex I; G.IV,14; G.IV,Annex I; H.CP,1,8; G.P.I,60)
사전 계획된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이 교전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1) 병원지대와 안전지대 및 지역
2) 기념물을 포함하고 있는 중심지역 (주로 특별보호되는 문화재)
3) 비무장지대

419. 임시적 보호지대: 비방어지역 (G.P.I,59)
임시적 보호지대는 그로부터 군사목적물이 나오고 군사행위가 취해지며, 1) 군대가 접촉하는 지대내나 그 인근에 위치하고, 2) 적의 점령에 노출되는 영역을 말한다.
그러한 지역은 비방어지역이라고 불린다. 이는 (합의가 필요한)비무장지대와는 달리 일방적 선언이 상대방에게 전달됨으로써 그 설정이 가능하다.
그 당사자는 선언을 접수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다 확실한 안전을 위해서는 비방어지역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비무장지대나 비방어지대로 인정되는 데 필요한 요건은 사실상 동일하다.

420. 지휘관의 의무
지역을 관할하는 지휘관은 보호지대를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예컨대, 합의사항의 실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 민간당국에 대한 지침).

421. 민간당국에 대한 조언
지휘관은 민간당국에게 실제적 측면과 이행조건에 관하여 적절히 조언하여야 한다 (예컨대, 지대(地帶)에 대한 책임, 주변경계에 대한 한계설정 및 표시, 군사요원, 장비 및 제거되어야 할 목표대상, 접근, 공급, 위생, 공공질서, 경찰의 기능, 민간주민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422. 특별 민간당국
보호지대의 주변경계가 도시나 지방 등 행정구역의 공식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러한 지대에 대한 행정당국(민간 "지휘당국")의 책임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특별지대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가진 특별 당국을 필요로 한다.

423. 지대의 주변경계, 특별 식별신호
지대주변의 경계는 지상이나 상공에서 명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해안이나 건물지역 또는 숲의 끝, 주요도로, 강 등)
적절한 경우에는 지대주변의 경계는 볼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의 표지로 표시되어야 한다.

424. 군대에 대한 교육지침
다음의 경우에 군대에는 정확한 행위지침이 하달되어야 한다.
1) 보호지대를 떠날 때
2) 보호지대를 전투없이 포기할 때
3) 보호지대를 점거할 때
4) 군사작전을 보호지대로 확대하는 것이 금지될 때
5) 보호지대 인근에서 전투행위를 개시할 때

제 9 절 민간당국과의 협력

425. 원칙
민간당국과의 협력은 군사작전으로 야기될 민간주민의 사상자와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들을 생존케 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예컨대, 경고, 대피소, 소개(疏開),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 등과 같이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안전조치들).

426. 민간조달
민간조달은 원칙적으로 1) 방해받지 아니하고, 2) 전술상황이 허용하는 한, 군사 수단(예컨대, 수송)에 의하여 공급된다.
지역관할 지휘관은 적절한 협력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컨대, 경찰이나 정보를 통하여).

427. 특별히 보호되는 물건이나 보호지대
지역관할 부대장은 특별히 보호되는 물건이나 보호지대에 관하여 민간당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예컨대, 그들의 존재와 그 주변의 경계, 군대지휘조직 및 민간지휘조직, 군인과 민간인의 행위에 관한 정보 등).

제 2 장 공격행위

428. 원칙
공격은 구체적인 군사목적물에 대해서만 행해져야 한다.
군사목적물은 군사목적물로서의 동일성이 인식되어야 하고 명확히 지명되어야 하며 분리되어야 한다.
공격은 분리된 군사목적물로만 한정되어야 한다.

429. 목적물의 선정 (G.P.I,57)
동일한 공격으로 비슷한 군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군사목적물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민간인과 민간목적물에 가장 피해를 적게 줄 수 있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430. 결합목적물 (G.P.I,51)
명확히 분리되는 다수의 군사목적물이 이와 동등한 다수의 민간인 및 민간목적물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나 읍 또는 마을 등에 존재하는 경우에, 이들 전부를 한꺼번에 하나의 대상으로 삼아 가하는 공격은 금지된다.

431. 해상운송수단, 항공운송수단
군함에 의하여 호위되는 민간선박과 적의 군용기에 의하여 호위되는 민간항공기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432. 공격의 방향과 시기 (G.P.I,57)
공격의 방향과 시기는 민간인 사상자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공장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작업시간이 지난 후 공격함).

433. 공격목표 (G.P.I,57)
특별한 무기나 화력부대의 목표는 특히 예상되는 전술적 결과 (예컨대, 파괴, 중립화)와 사용되는 탄약의 파괴력(양, 탄도의 수치, 정확도, 유효사거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군사목적물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의 주의를 가지고 결정되고 할당되어야 한다.

434. 목표설정: 주의 (G.P.I,57)
목표설정에 있어서 취해야 할 주의의 정도는 군사목적물을 선정할 때 존중되는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435. 목표설정: 책임 (G.P.I,57)
적절한 목표설정을 위한 책임은,
1) 선정된 무기나 무기체계가 충격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좌우되고

2) 해당목표에 사용할 무기나 무기체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귀속된다.

436. 경고 (G.P.I,57)
전술상황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민간주민에게 영향을 주게될 공격에 관하여 사전에 효과적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예컨대, 민간인의 대피를 촉진하기 위한 소총사격이나 항공기로부터의 전단 살포).

437. 표시된 문화재 (H.CP, 4,11)
특별보호를 받는 문화재표시가 된 목적물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공격해야 할 군사적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전술상황이 허용하는 한, 시간을 제한하고 그 목적물중 보다 덜 중요한 부분을 대상으로 공격하여야 한다.
적시에 사전경고를 함으로써 방어자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일반보호를 받는 문화재표시가 된 목적물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와 행위를 취하는 것이 좋다 (긴절한 군사적 필요성).

438. 공격중 통제 (G.P.I,57)
군사적이지 않은 목적물이나 대상이 출현한 경우에는 공격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어느 경우에든 비례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5편 제1장 제1절 참조).

제 3 장 방어행위

439. 원칙 (G.P.I,58)
방어는 기본적으로 민간거주지역 밖에 조직되어야 한다.
민간인과 민간목적물은 군사목적물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휘관은 민간당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440. 방어위치의 선정 (G.P.I,57,58)
비슷한 군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몇개의 방어지역중 하나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인과 민간목적물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441. 부대위치의 방어 (G.P.I,57)
이 편의 조항은 의료시설을 제외하고는 군부대 위치의 방어에 적용된다.

442. 반격 (G.P.I,57)
방어지점으로부터 역습하는 경우에는 공격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443. 민간인의 철수 (G.P.I,58)
군사목적물의 인근에서 민간인을 철수시키는 경우에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역으로서 위험이 없는 지역으로 하여야 한다.

444. 민간목적물의 철거 (G.P.I,58)
민간목적물의 철거는 기본적으로 군사목적물 부근을 벗어난 지점으로 하여야 한다.

445. 특별보호되는 시설
특별보호되는 시설에 대한 표시는 그 식별표지가 진실하고 주변환경에 비추어 적절하여야 한다 (예컨대, 충분한 크기, 위장의 요건).

446. 경고 (G.P.I,57,58)
전술상황이 허용하는 한, 민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어조치는 사전에 효과적으로 경고를 발하여야 한다 (예컨대, 특정 가옥이나 지역으로부터의 소개나 철거와 대피를 위하여).

447. 표시된 문화재 (H.CP,4,11)

특별보호를 받는 문화재표시가 된 목적물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공격면제를 철회해야 할 군사적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전술상황이 허용하는 한, 시간을 제한하고 그 목적물중 보다 덜 중요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적합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예컨대, 후송이나 철거, 보호기구의 사용, 혼란방지를 위한 보호표지의 제거).
사전경고를 하는 목적은 공격자로 하여금 목적물의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일반보호를 받는 문화재표시가 된 목적물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와 행위를 취하는 것이 좋다 (긴절한 군사적 필요성).

제 4 장 이동과 주둔위치

448. 원칙 (G.P.I, 57,58)
의무부대를 제외한 군부대는 그들의 존재가 평시에라도 민간주민과 민간목적물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민간인 밀집지역의 밖으로 이동하거나 밖에 머물러야 한다.

449. 이동: 원칙 (G.P.I,57,58)
부대가 민간인 밀집지역의 중심부나 그 근접지역을 통과할 경우에는 신속히 이동하여야 한다.
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사전에 효과적인 경고를 발하여야 한다 (예컨대, 민간인이 철수하거나 대피소를 마련하도록).

450. 이동: 중단 (G.P.I,57,58)
부대가 이동을 중단 (예컨대, 정해진 시간동안의 이동 후 정규적 정지, 우연한 정지)하는 경우에는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민간인 밀집지역의 밖이나 적어도 보다 덜 밀집한 지역에서 이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451. 주둔위치: 원칙 (G.P.I,57,58)
부대가 비록 일시적으로 주둔하는 경우에도 민간지역과 민간인에게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민간인 밀집지역내나 그 근접지역에 부대가 주둔하는 경우에는 민간지역에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예컨대, 적어도 명확한 물리적 분리: 군용가옥과 다른 건물간의 적절한 이격).

452. 주둔위치: 장기주둔의 경우 (G.P.I,57,58)
부대가 보다 장기적으로 민간지역에 주둔하고자 할 경우에, 담당지휘관은 민간지역의 위험을 완화시킬 추가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컨대, 부대주둔지역의 경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하고, 주둔지에 대한 접근을 제한 내지 규제하며, 부대원에게 주의지침을 하달하고, 민간주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453. 표시된 문화재 (H.CP,4,11)
표시된 문화재에 대하여 공격면제를 철회할 경우에는 방어시에 적용되는 조항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 6 편 전투행위 수칙

서 론

이 편에서는 육, 해, 공 또는 합동 전투행위에 있어서, 그것이 어디에서건, 그리고 어떤 규모의 전투가 행해지든, 전장(戰場)에서의 희생자를 위한 방법으로서 그곳에서 전술적 전투행위를 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행위수칙에 관하여 다룬다.

제 1 장 **전투**는 해상과 공중에서의 일반적인 주의점과 특별한 방법, 격오지내 또는 부근에서의 행동수칙, 특별보호하에 있는 지역, 물건과 사람, 그리고 현장에서의 민간당국과의 협력 등에 관한 것이다.

제 2 장 **포획된 사람과 물건**은 전술적 상황이 허용하는 한 전투중 또는 종료후에 있어서 포획된 물건과 사람의 범주에 드는 것들에 대하여 취해야 할 첫째 조치에 관한 것이다.

제 3 장 **적과의 비적대적 접촉**은 화력의 지역적 중지에서부터 넓은 지역의 보다 장기적인 중립화에 까지에 걸치는 협정을 위한 적대군간의 공식적인 합의에서 필요한 간단한 일방적 의사통보에 관한 것이다.

제 4 장 **전투후의 조치**는 후송되었던 사람과 물건의 복귀 및 민간인들을 위한 정상화 방안에 관한 것이다.

제 1 장 전 투